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551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들의 기초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예산범위 명확화(안 제21조)
- 나. 청년 건강 보호·증진 위한 필요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인권영향평가: 별도 요청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10년 사이에 불균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국내 청년층(20·30대)의 2형 당뇨병 유병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고혈압 유병자 수도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과거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던 만성질환이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청년 인구 수는 6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 비율이 높은 편임에 따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인 청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구분	청년비율(%)	청년 인구수(명)	총인구(명)
서울시	30.28	2,826,369	9,331,828
1 관악구	41.45	198,088	477,812
2 영등포구	34.95	130,634	373,773
3 광진구	34.57	114,779	331,963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19~39세) 2024.12.기준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1조(청년의 건강 증진)제2항은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청년기본법」 제21조¹⁾에 따라 지자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지속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청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청년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이용권 지급 등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비 지원’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중 5%에게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 사업이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사후평가 및 환류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현금화, 타인 양도 등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